



제 202300148 호

형 식 승 인 서

신청인 성 명: 이상환
 상 호: (주)미래디앤에스
 사업장주소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83, 나동 (목행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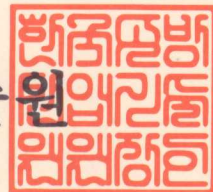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·제10항 및 제38조제1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·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- 1. 품 명 완강기지지대
- 2. 형 식 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340°
- 3. 형식승인번호 지지23-2
- 4. 조 건
- 5. 비 고

2023년 02월 22일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

검 사 성 적 서


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: 031-289-2817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300148

페이지 : (1) / (총 2)

1. 신청인 원 본 재발급
○ 업체명 : ㈜미래디앤에스
○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83, 나동 (목행동)
○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300024호 2023. 01. 17.
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완강기지지대

4. 검사기간 : 2023. 01. 17. ~ 2023. 02. 22.

5. 검사방법 : 소방청고시 제2022-27호(2022.12.01.)
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7. 검사환경

○ 온 도 : (20.0 ± 5.0) °C, 습 도 : (43 ± 7) % R.H.

8. 검사결과 : 합격

※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페이지 참조)

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확 인 | 실 무 자 | 기술책임자 |
| | 성 명 : 전 명 호 | 성 명 : 이 주 설 |

위 성적서는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3 년 2 월 22 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, KS Q ISO/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.
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첨부]


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: 031-289-2817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300148

페이지 : (2) / (총 2)

형식시험결과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업체명 | (주)미래디앤에스 | 형식승인번호 | 지지23-2 |
| 품명 | 완강기지지대 | 형식 | 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340° |

| 시험항목 | | | 결과 | |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|----|----|
| 조항 | 항목 | 기준 | 시료(개) | 검사결과 | 판정 | |
| 제16조 | 지지대의 구조 |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| 5 | 적합 | 합격 | |
| 제17조 | 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| 최대사용하중이 1 500 N 이상의 하중인지 여부 | 2 | 적합 | 합격 | |
| | | 최대사용자수(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함)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(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함)으로 함 | 2 | 적합 | 합격 | |
| 제18조 | 재료 | 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 사용하는지 여부 | 시험생략 | | 합격 | * |
| | | 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(중성,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(KS D 9502))에 의하여 5회(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,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| 시험생략 | | | |
| 제19조 | 강도시험 | 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는지 여부 | 2 | 적합 | 합격 | |
| 제20조 | 충격시험 | 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,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.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여부 | 2 | 적합 | 합격 | |
| 제21조 | 표시 |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| 5 | 적합 | 합격 | |

※기타 : “*” 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2항,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」 제2조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

“끝”